

문서번호	SLS-CSR-01
제정일자	2018.07.20.
개정일자	2023.09.22.
개정번호	1

신화로직스 안전 · 보건방침

2023. 09. 22.

(주) 신화로직스

제1조 (목적)

(주)신화로직스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의 발생하는 안전보건관련 유해·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전보건경영 정책은 모든 사업 현장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기여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안전보건경영 정책은 (주)신화로직스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주)신화로직스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실행체계)

안전보건경영 정책의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하고 지속적 이행 및 개선을 위해 P(Plan)-D(Do)-C(Check)-A(Action) 순환과정을 통해 운영한다.

1. 계획 : 조직의 활동, 서비스 및 제품에 관련된 중요 위험요소를 파악
2. 실행 및 운영 : 조직의 활동, 서비스 및 제품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적절히 관리
3. 점검 및 시정조치 : 안전방침, 목표, 법규사항에 대비하여 달성여부 및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함
4. 경영검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평가

제4조 (안전보건 방침)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5조 (정책공약)

1. 모든 경영활동에 안전중심 경영원칙을 적용한다.
2.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경영 활동에 참여한다.
3.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5.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용객과 임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6조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7조 (커뮤니케이션 공지)

안전보건경영 관리 체계의 변화와 성과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홈페이지, 블로그)을 통해 공시한다.

제8조 (산업안전)

1. 사업장의 모든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 순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며, 성과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장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건강 및 안전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외 또는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들에게 상황전파 대피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상황발생 시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감지설비, 소방장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공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제10조 (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유해인자 노출 저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제도적 요건에 따른 통제로 앞의 유해요인들로 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신체부담 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제13조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위험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장치 연동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제14조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적할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임직원의 건강검진)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신 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 및 관리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